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8.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 등록장애인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로 구분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추가(안 제5조 제1항제12호, 제13호)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추가
 -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을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애인 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제1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9.15.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체계가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구분됨.
따라서 종전에 지원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으로 등록된 사람”이 개정법령에서 삭제되었으나 부칙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치를 두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제1항제13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란을 신설한 바,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고 면제 또한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상 수수료 면제 대상과 대부분 동일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등록장애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으나 면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을 추가하여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를 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에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9 호
----------	---------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협조」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 나. 등록장애인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수수료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로 구분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에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 제13호)
- 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추가
 -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을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추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추가 예산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1.6.10. ~ 6.30. / 20일 간)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별표의 1호 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4종)”을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8종)”으로 하고, 사. 기타 제증명란 다음에 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1통	400	
2)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통	500	
3)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	1건 1회	300	
4) 「주민등록법」 제27조의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명	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4종)

(단위: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신 설>		

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8종)

(단위: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아.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1통 1통	400 500
2) 「주민등록법」 제29조제 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1건	300
3)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 세대열람을 포함)	1회	5,000
4) 「주민등록법」 제27조의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명	